

전자결제서비스 이용약관서

"가맹점"과 "스핀"은 "스핀"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"가맹점"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대면 거래상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(이하 "상품" 이라 한다)에 대해 "스핀"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있어 "가맹점"과 "스핀"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,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① 거래인증서비스:

-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: 신용카드사 회원이 인증서를 발급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(ISP)서비스, 안심클릭결제(MPI)서비스, 기타 결제대행사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서비스
- 구매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(앞 2자리), 주민등록번호(뒤 7자리)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(10자리)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정보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일치여부를 "스핀"의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.
- 거래인증서비스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기타 제휴 결제사로부터 유효성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 및 도용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,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것은 "가맹점"의 책임으로 한다.

- 대금정산서비스 : "스핀"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"가맹점"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금융기관 및 제휴결제사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제반 가감분을 제하고 "가맹점"에게 지급하는 서비스.

제 3 조 (서비스의 범위)

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: 인증/승인(승인취소)/매입대행(매입취소)/대금정산
- 기타 "가맹점"과 "스핀"이 합의한 추가서비스 : 필요시 별도 신청(선지급 서비스 등)

제 4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

제 5 조 (책임과 의무)

- "가맹점"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"가맹점"은 "이용자"에게 "결제기관 등"의 이용대금 청구서 또는 매출전표 등에서 "회사" 또는 "결제기관 등"의 명의를 사용되나,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"가맹점"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"가맹점"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-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(분실 및 도난카드,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)로 인한 "결제기관 등"의 부도 거래 발생 시 "가맹점"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.
- "가맹점"은 서비스 개통 요청 시 "스핀"에게 통보한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며, 판매 상품 및 서비스가 이와 다를 경우 서비스 중지 또는 정산지급 보류될 수 있다.

- "스핀"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"스핀"은 "가맹점"에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"가맹점"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"스핀"은 대금정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정산자료를 "가맹점"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매출의 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급)

- "가맹점"의 상품에 대하여 "스핀"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"스핀"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"가맹점"의 매출로 귀속된다.
- "스핀"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"가맹점"에게 월 1회 (해당월 마지막 정산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) 발급 교부한다.

제 7 조 (서비스 이용료, 정산주기, 담보 및 제출서류)

- 각 결제수단에 따른 서비스이용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하단의 [표]에 명시된 내용에 의한다.(VAT별도)

국내 신용카드	일반		연매출 30억 이상	정산주기	
	중소3		10억~30억 미만		
	중소2		5~10억 미만		
	중소1		3~5억 미만	결제유형	
	영세		3억 이하		
해외신용카드			해외발행카드 기준		
담보	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		해당	미해당(면제 시 체크)	

- 카드사 및 정부정책에 따라 구간별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.

- "가맹점"이 "스핀"에게 계약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[제출서류] 계약서 2부, 사업자등록증 1부, 대표자 신분증 1부, 입금계좌 사본 1부

제 8 조 (거래내역의 확인)

- "가맹점"은 서비스이용에 따라 발생한 거래내역을 상호 연결된 정산망에 의거 "스핀"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, "스핀"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,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"가맹점"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, 교부한다.
- 거래 내용의 명백한 입금오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"가맹점"과 "스핀"간에 연결된 정산망에 의해 "스핀"이 "가맹점"에게 전송 또는 화면회화를 통해 확정된다.

제 9 조 (거래의 취소 등)

- "가맹점"은 구매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.
- "스핀"은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해 "가맹점"에게 지급할 다음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, 금액이 부족할 경우 "가맹점"은 "스핀"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(선입금 후 취소 등)으로 상환해야 한다.
- "가맹점"은 기 완료된 거래건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"가맹점"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

제 10 조 (승인한도)

- 본 서비스에 대한 "가맹점"의 월 승인한도는 스핀 내부정책에 의거하되 "가맹점"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 및 "스핀"의 내부 기준에 따라 향후 상호협의 하여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비정상 및 부정거래 사고에 대한 처리)

-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(현금성 대출,본인미사용건 [제 3자 도용사고] 등)에 대하여 "스핀"은 "가맹점"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"가맹점"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정산 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.
- "가맹점"에서 발생한 결제수단 별 거래 중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기관에서(금융기관 등)"스핀"의 정산대금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"스핀"이 판단한 경우, "스핀"은 "가맹점"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,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"가맹점"은 "스핀"이 지정, 요청한 방법에 따라 "스핀"의 손실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.

제 12 조 (정산대금 선지급 서비스 신청에 따른 특약)

- 본 조는 "가맹점"이 전자결제서비스 정산분에 대하여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.
- 선지급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서비스 이용수수료	지급가능금액	1회 지급한도	기타
			선지급 서비스 신청 완료 승인건에 대한 취소 불가

제 13 조 (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)

-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.

제 14 조 (관할 법원)

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"가맹점"과 "스핀"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"스핀"의 관할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"가맹점"과 "스핀"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[가맹점] (사업자 구분 :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비사업자)

상 호 (이 름) :

사업자번호(주민번호) :

주 소 :

대 표 자 : (서명/인) * 인감도장 날인

[스핀]

상 호 : 주식회사 스핀

사업자번호 : 885-87-03020

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5,
성남아이파크디어한 706호

대 표 자 : 김병무 (서명/인) * 인감도장 날인